

# 출장보고서

- 유럽 주요국 재정관리실태조사 -

2011. 12.

박 현

고 유 은

 공공투자관리센터

## 목 차

I. 출장 개요

II. 출장 일정

III. 기관별 면담 주요내용

IV. 시사점(영국/재정사업관리)

별첨 : 질문지

## I. 출장 개요

□ 출장명 : 유럽 주요국 재정관리실태조사

□ 출장목적 :

- 주요 선진국의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실태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재정정책 수립에 활용

□ 출장기간 : 2011년 12월 4일(일)~10(토), 5박 7일

□ 대상국가 및 기관 :

- 영국 재무부(HM Treasury),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 벨기에 소재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프랑스 전략계획센터(Centre d'analyse strategique), 환경지속가능발전교통주택부(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des transports et du logement)

□ 주요 조사내용 :

-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실태 : 주요 선진국 예산편성 절차의 법적 근거, 대규모 재정사업의 의사결정과정 및 단계별 시행주체 등
- 중기재정운용계획 현황 : 중기 기간 부처별 또는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방법, 중기계획의 구속력, 재정준칙의 종류·형식, 장기재정전망 실시 현황 등

□ 출장자 : PIMAC 박현 재정투자평가실장, 고유은 전문연구원

동반자: 기획재정부 윤정식 타당성심사과장, 재정정책과 민지원 사무관, 재정분석팀 이지은 사무관

## II 출장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2.4(일) 13:10	(이동) 인천 → 런던 * KE 907	12시간 소요 (시차 9시간)
12.5(월)	HM Treasury 면담	13:00~13:45
	Dept. for Transport 면담	15:00~17:00
12.6(화) 10:25	(이동) 런던 → 브뤼셀	1시간 15분 소요 (시차1시간)
	European Commission 면담	15:00~16:30
12.7(수) 09:45	(이동) 브뤼셀 → 파리	1시간 소요
12.8(목)	Strategic Analysis Centre(CAS) 면담	09:30~11:00
12.8(목)	Ministry of Transport 면담	10:00~12:00
20:35	(이동) 파리 → 인천 * KE 902	11시간 소요 (시차 8시간)
12.10(토) 15:25	인천 도착 및 해산	

### Ⅲ. 기관별 면담 주요내용

#### 1. HM Treasury(영국 재무부)

일시 : 2011.12.5(월) 13:00~13:45

장소 : HM Treasury meeting room

면담자

○ Felicity Harvey

Director, Performance and Reform Unit

[felicity.harvey@hmtreasury.gsi.gov.uk](mailto:felicity.harvey@hmtreasury.gsi.gov.uk)

○ Elliott Ball

Performance Policy Branch Head, Performance and Reform Unit

[elliott.ball@hmtreasury.gsi.gov.uk](mailto:elliott.ball@hmtreasury.gsi.gov.uk)

외 1인

주요 논의내용 :

#### (1) 최근 영국 재정정책 동향

○ 2010. 5, 연합정부 (David Cameron 수상) 출범 이후 재정적자 축소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 예산 계획 수립 (Emergency Budget for 50 days) 을 발표

○ 2010. 6, Fiscal Consolidation Plan을 발표

- 다음과 같은 Fiscal Target을 설정: ① 구체적인 재정 행동강령의 공표 (announcement of fiscal action); ② 신뢰성 있는 재정 전망 (credibility based forecast); ③ 재정 규율의 확립 (fiscal rule and mandate)

○ 2010. 8,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를 수행

○ 물가상승과 유로존 채무위기에 대한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음.

○ 2011. 11, Autumn Statement 발표

(2) 재정전망 수행 기구 (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의 신설

- 재정전망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여 장래 경제 및 재정상황 예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됨.
- OBR은 예산에 대해 감시역할(watchdog)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연간 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검토를 수행하기도 함.
- Long-term vision 하에서 향후 50년까지 재정전망을 수행하고 재정건전성보고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 인구변화, 노령화 연금 등 전략적인 장기정책 과제를 다룸.
- 최근 국가연금개혁 (state pension reform) 대안의 simulation 결과를 발표: 최초연금수령연령을 66세에서 67세로 상향할 경우 600억 파운드 절감 효과 추정.

(3) 재정전망 현황

- 공공부문 재정은 크게 삭감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11월 29일 발표한 추계보고서(Autumn Statement)에서 영국 정부는 2011년과 2012년 경기전망을 0.9%와 0.7%로 각각 하향조정 하였음.
- 2010년 예산심사에서 부처 예산산감금액은 약 810억 파운드

(4) EU협약에 따른 재정준칙 이외의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재정준칙

- 중기 재정준칙(fiscal mandate)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서, 2010년 발표된 준칙은 구조적 적자 감소(reduction in structural deficit)와 공공부문 부채 목표를 고정(fixed target for debt)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재정정책 및 국가채무 관리 정책 작성 및 이행에 대해 영국 정부는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이후 이를 개정하는 Budget Responsibility & National Audit Act 2011 아래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는 위임법(secondary legislation) 역할을 함.

(5) MPA (Major Projects Authority: 대형사업관리청)

□ 개요

- 정부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실적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 대형사업\*의 관리, 사업 실적의 제고, 사업의 예산 및 계획 기간 내 조달을 위해 2011년 4월 Cabinet Office의 Efficiency and Reform Group 내에 신설되었음(아래 조직도 참조).

\* 재무부(HM Treasury) 승인이 필요한 중앙정부 프로젝트(사업) 및 프로그램

- 대규모 사업을 관리감독하며, 내각부, 재무부 및 각 부처간 협의를 도모함.
- 대규모 사업을 검토하고 재무부 승인에 위한 정보제공 역할을 담당함.

□ 주요 기능 및 역할

- 정부 대형사업 포트폴리오(Government Major Projects Portfolio) 작성 및 관련 내용 고시
- 사업 초기단계에서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심사 및 승인 관련 계획 검토
  - 주무관청은 통합 심사 및 승인 계획(Integrated Assurance and Approval Plans)을 제출하며, 재무부 승인 일정(timetable)을 포함함.
  - 심사(assurance)를 통해 기간 및 예산 내 집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의 성과 여부를 검토함.
  -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경우 착수 관문심사(Starting Gate Review)가 의무화되었으며, MPA는 심사 중 이를 수행하여 사업의 가능성 여부(deliberability)를 제고하고 사업의 성과 여부 확인
- 쟁점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재무부, 주무부처와의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심사(consequential assurance)를 수행하고 필요시 직접 관여
- 필요시 장관 등에 현안 및 쟁점 상정
- 사업 및 프로그램 관리에 있어 각 부처 공무원 교육
- 정부 대형사업에 현황 연간 보고서 발간

□ 기타

- 심사(assurance)는 각 대형 사업 특성에 맞춰 구성되며, 인력은 M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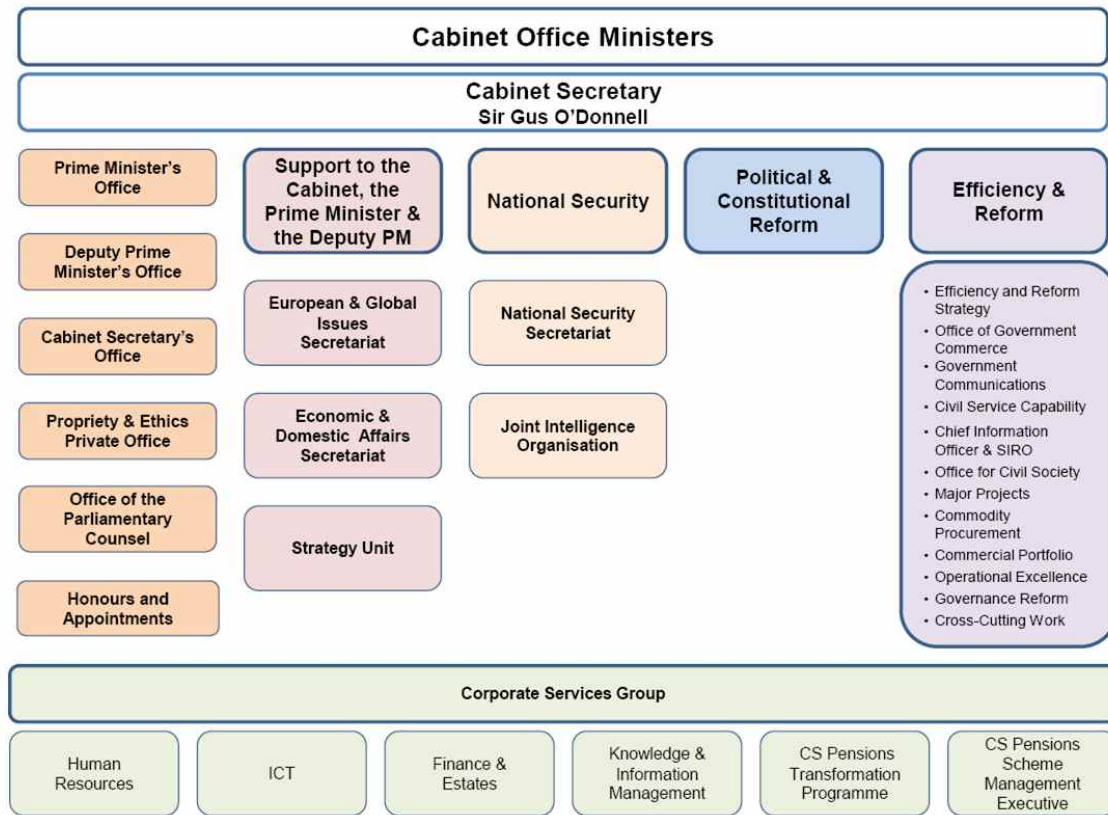
직원, 관련 경험이 있는 공무원, IUK와 같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짐.

- MPA의 장(Executive Director)은 내각부장관(Minister for the Cabinet Office)과 재무부차관(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이 공동의장인 Efficiency and Reform Group Board에 보고함.

## □ Major Projects Review(대형사업심의)

- 대형사업심의 대상
  - £5,000만 이상, ICT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
  - 정부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정부의 재정리스크 및 평판리스크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사업
  - 장관 및 재무부에서 특별한 우려를 표명한 사업
- 심의 결과
  - 2010년 6월-8월 204건의 대형사업심의 대상으로 고려.
  - 64개 사업이 주의 관찰 (look closely) 대상이었고, 31개 사업은 심층조사 (deep investigation) 대상으로 분류
  - 다수의 사업에 대해서 종료 또는 사업범위 조정 검토의견을 제시함.

[내각부 조직도]



□ Efficiency and Reform Group(ERG)

-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직구조를 통해 범정부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를 목적으로함.
- 기능 및 역할
  - 정부의 고정지출 감축 등을 통한 정부기능의 효율성 제고
  - 투명성 제고 등 개혁적인 쇄신을 통해 공공부문 서비스 강화

2. UK Department for Transport(영국 교통부)

□ 일시 : 2011.12.5(월) 15:00~17:00

□ 장소 : Department for Transportation meeting room

□ 면담자 : Lucy Chadwick

Director, Projects Directorate

[lucy.chadwick@dft.gsi.gov.uk](mailto:lucy.chadwick@dft.gsi.gov.uk)

- Mark Livock

Principal Sponsor, Station Enhancements Major Projects

[Mark.livock@dft.gsi.gov.uk](mailto:Mark.livock@dft.gsi.gov.uk)

- Mr. Kieren Rix

Deputy Director, Strategic Finance and Planning Group

Finance Directorate

□ 주요 논의내용 :

(1) 인프라 투자 의사결정 (investment decision)

- Strategic Finance & Planning, Group Financing Directorate에서 담당. 이 국에서는 이외에도 재무부와 재원조달 협상, 교통부 내에서의 예산배분 업무를 담당함.
- 교통부에서 경제성분석(economic study)과 재원조달가능성(affordability)을 검토한 후 재무부에서 예산심사(Spending Review)를 통한 정치적 판단으로 사업 시행 여부 결정
- 2011년 지출심사 (spending review)는 대폭적인 예산삭감 (25%로 시작하였다가 삭감 목표가 40%까지 증가)을 목표로 하였으며, 자본지출에 대한 검토도 함께 수행하였음.
- 지출심사에서 자본지출에 대한 검토는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선택 (strategic choice)로서 중장기 정책방향에 의거하여 이루어지지만, 개별사업에 대한 의사결정도 함께 고려함.
- 부문별 투자계획의 시계(time horizon): 10년을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 임기에 따라 약 4년 정도의 시계를 갖고 이루어지는 현실임.

(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 각 부처는 부처지출한도 (DEL : Department Expenditure Limits)를 할당받고, 재정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financial business case) 입증하면, 재무부가 예산심사 시 사업의 수행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최종 판단함.
- 대형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판단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MPA(Major Projects Authority)가 평가 업무를 담당
  - 대형사업심의그룹(Major Projects Review Group)이 재무부 내에 있으며, 이 중에는 교통전문 인력이 포함되어 있음.
- 재무부와 비공식 접촉은 매우 중요함.
  - 주요 사업의 시행여부는 결국 최고위 공무원 협상 (negotiation of senior director level)을 거쳐서 결정됨.
- 이때 Spending Review에서 제시한 지출계획이 매우 중요한 제약조건이 됨. 기술적으로는 SR의 범위를 넘을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SR은 고위층의 정치적인 결단이 담겨져 있어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음. 예를 들어, DEL(Department Expenditure Limit) 내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변경이 가능

(3) Mega Project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 사례(런던 St. Pancras Station 재개발 사업)

-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타당성조사 업무를 담당할 주식회사 형태의 SPV(Special Purpose Vehicle)인 HS1 Limited 를 구성.
  - SPV는 퇴직 고위공무원(senior director level) 등이 의장을 맡고 교통계획, 토목 엔지니어,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50-60명 정도의 직원으로 이루어짐.
  - SPV는 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과정 등 사업을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함. 한국의 기획단과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됨.
- DfT는 SPV가 수행한 타당성조사를 검토함

- 검토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다면 합의를 거쳐야 함.
- 예를 들어, 범정부의 전략적 차원의 검토, DfT 차원의 검토, DfT 내 부서간 협의, 필요시 의회의 T/F 검토를 거침.

(4) 통상적인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 주체

- DfT가 통상적인(routine) 사업에 타당성조사를 수행함.
  - 사업 집행기관(delivery agency)에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음.
-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DfT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역할(assurance role)만을 수행함.

(5) 경제성 분석 지침

- 경제성 분석 지침인 TAG(Transport Analysis Guidance)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비용 및 편익 추정에 대한 상세한 방법론을 제시함.
- Central Economics Division이 TAG의 개정과 승인업무를 담당함.
  - Tracy Waltho, chief economist

(6) Infrastructure Plan 2011

- 재무부가 주도한 10년간 인프라 투자계획
- 교통부의 평가
  - 상당부분의 재원을 지방정부 및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계획의 현실성이 낮음.
  - 한편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을 삭감하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propaganda의 성격이 있음.

### 3. European Commission(유럽집행위원회)

일시 : 2011.12.6(화) 15:00~16:30

장소 : Johan UREEL office

면담자 : - Johan UREEL

Head of Unit, Directorate-General for Budget

[johan.ureel@ec.europa.eu](mailto:johan.ureel@ec.europa.eu)

주요 논의내용 :

#### (1) 다년도재정체계(MFF :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 집행위원회 예산국(Directorate-General for Budget)에서 담당하는 EC 다년도재정체계는 예산지출한도를 정해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
- 주요 지출부문에 대한 7개년 지출한도설정 가이드라인으로서, 연간 예산계획과는 별개의 개념임.
- 1988년 처음 5개년 계획으로 도입된 후 현재는 7년 단위로 계획

#### (2) 다년도재정체계 수립 과정

- 유럽연합의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 및 승인하도록 하는 협상\* 단계를 거침.
  - \* 협상 기간 동안 DG for Budget은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이후 유럽연합의회를 통과해야 하여,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평균 약 2년 정도가 소요됨.
- 예산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 7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 예산 금액을 7로 곱한 금액에 2% 물가상승률 적용

#### (3) 유럽연합 수입원 및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추가 도입

- 관세(15%), 부가가치세(15%), 회원국별 국민총소득에 따른 분담금(7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자가 없는 구조로 항상 재정수지가 평형상태임.

- EU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 : 새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데 계산상의 차이만 있는 것이며, 큰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sup>1)</sup>.
- 별도의 EU 부가가치세율로 회원국에 부과 :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 합의되지 않을 경우 유로존 17개국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EU 예산이 아닌 국가 재정에 편입

(4) 재정전망

- EC의 경제재정국(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CECFIN)에서 전망하며, 전망치는 대체로 회원국 신뢰가 확보된 상태

4. 프랑스 Centre d'analyse stratégique(전략분석센터)

- 일시 : 2011.12.8(목) 09:30~11:00
- 장소 : Centre d'analyse stratégique meeting room
- 면담자 : - Vincent Chriqui

Director General  
[vincent.chriqui@strategie.gouv.fr](mailto:vincent.chriqui@strategie.gouv.fr)

- Pierre-François Mourier  
 Adjoint Director General  
[pierre-francois.mourier@strategie.gouv.fr](mailto:pierre-francois.mourier@strategie.gouv.fr)

- Jean-Paul Nicolai  
 Chief of Economy and Finance Department  
[jean-paul.nicolai@strategie.gouv.fr](mailto:jean-paul.nicolai@strategie.gouv.fr)

- Pierre Bollinger  
 Responsible for Partnership  
[pierre.bollinger@strategie.gouv.fr](mailto:pierre.bollinger@strategie.gouv.fr)

---

1) 그러나 2011.12.13 현재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금융강국인 영국이 국가 금융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새로운 재정협약을 거부한바 있어 EU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주요 논의내용 :

(1) 기관소개

- 전신은 국가계획위원회(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로, 1945년 총리실 산하에 설립되어 전후 재건 및 국가부흥을 위한 정책제언 역할을 수행하였고, 특히 국가 선도사업\* 등에 대한 지원 역할을 담당함.
  - \* 국가에서 주도한 핵전기, 고속전철, 우주공학 및 항공사업 등 현재 경제성장의 주축을 담당하는 사업을 발굴
- 2006년에 전략분석센터(CAS)로 기관명 변경하였으며, 이는 프랑스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서 중기재정 분석 및 제언 기능을 수행
  - \* 주요 기능이 planning 수립에서 strategy 수립으로 전환
  - \* 정부의 장기비전 advisory 역할
- 행정차원에서의 범부처간 대화 및 협의에 대한 지원 역할
- 연간 예산 €20억, 약 150명 상시 고용

(2) 모니터링 기관

- 모니터링은 유럽연합 차원의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경제재정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에서 수행

(3)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 현재 기준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재정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의 3%, 국가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해야만 함.
-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각국의 재정 규율을 위한 EU집행위원회 역할이 강화될 예정
- 이를 각국의 법으로 재정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프랑스 등은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

(4) 장기 전망 보고서

- CAS에서 발행한 “France 2030”은 분야별 성장 가능성을 통한 거시경제적 전망 제시. Planning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전망에 주안점.
- 보고서 집필에 약 8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재무부와 CAS가 공동 작업. 작업과정에 전문가, 의원, 외국전문가,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참여.

- 그 외 퇴직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보고서와 “에너지 2050” 같은 장기전망 보고서가 있음.
- 정부 정책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나,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5. 프랑스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des transports et du logement(환경지속가능발전교통주택부)

일시 : 2011.12.9(금) 10:00~12:00

장소 : Ministry of Transport meeting room

면담자 : - Guillaume LAPIERRE

Coordination of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guillaume.lapierre@developpement-durable.gouv.fr](mailto:guillaume.lapierre@developpement-durable.gouv.fr)  
외 1인

주요 논의내용 :

(1) 프랑스 교통 및 물류 개요

- 프랑스 총 물류이동량: 연간 약 335억톤·km
  - 도로: 87%; 철도: 11%; 운하: 2%
- 도로망 현황
  - 국가관리: 약 2만km (민간투자도로\* 8,900 km포함)
  - 지방정부관리: 377,400km; 시정부관리 630,000km임.
    - \* 1955년 도입된 민자도로의 경우,
- 민간투자도로 (PPP) 사업 현황
  - 1995년 민자도로법 (Concession Act) 도입. 실제 첫 번째 PPP 사업은 1970년도에 이미 시행됨
  - 교통량을 포함한 모든 리스크를 민간사업자가 부담. 교통량이 일정 수치를 초과시 수입을 공공과 민간이 50:50으로 수익을 배분하도록

규정.

- 계약기간(concession period)가 50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추세임.
- 민간이 100% Financing 수행. 정부의 재정지원은 예외적.

## (2) 교통부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 환경지속가능발전교통주택부 내에 있는 인프라교통해양국(Direction-General for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내의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
  - DIT(Depart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도로, 철도, 공항시설의 건설, 운영, 관리를 총괄
  - DST(Department of Transport Services): 도로 및 철도 정책 및 법제도 등 서비스 분야 담당

## (3) 도로사업 재원조달

- 프랑스 도로 인프라 재정조달청(Agence de financement des infrastructures de transport de France, AFITF)이 정부 재정지원 기관 역할을 담당함. 교통부 및 재정부의 공동 관리를 받음.
-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건설은 대부분 AFITF와 시, 도정부가 재원을 분담함. 개략적인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 비율은 60 : 40임.
- 관리 및 운영비용은 100% 중앙 정부가 담당함.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수요예측이 너무 낮을 경우 사업 초기에 AFITF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
- AFITF 수입원 : 정부예산, 민간의 국토사용료, 민간사업자 세금, 벌금, 대형 트럭 toll (약 18개월 후) 등.
- 총액 약 1억 유로

## (4) 투자결정

-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결정권은 DIT에 있고 AFITF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 편당하는 기관임.
- 투자결정(decision to invest)은 사업시행 이전에 이루어지며, 이를 위

한 기술적 전문성 및 관련 산하 기관은 DIT에서 총괄

- 부처간 협력규정은 따로 없으나 철도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대화 및 협의 필요.
- 부처간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국무총리가 조정역할이 중요함. 정치적인 판단이 중시됨.
  - TGV 건설은 높은 건설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국무총리가 결정을 주도한 사례임.

#### (5) 토지수용

- 민자고속도로 토지수용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수용권한을 민간에 위임하고(authorization) 토지수용비용 및 제반비용은 민간이 책임짐.

### IV. 시사점(영국/재정사업관리)

#### □ 주요 재정사업에서 재정당국의 역할

- 재정운용에 있어서 재무부의 역할은 절대적. 재무부가 super-ministry 로의 위상을 갖는 영국식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재무부는 개별 부처의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통제와 동시에 대규모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식/비공식 경로로 통제를 가하고 있음.
  - 재무부는 Top-down 방식인 부처별 지출한도 (DEL: Department Expenditure Limit)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inception) 단계 뿐 아니라 사업 추진단계에도 지속적으로 monitoring을 수행
- 유럽의 재정적자에 따른 경제위기확산에 대한 우려 분위기 속에서 재무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monitoring and reviewing에 대한 재정당국의 역할이 강화/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타당성조사에서 재정당국의 역할

- 영국은 Cabinet Office에 MPA (Major Projects Authority)를 설치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관문심사제도 (Gatekeeping process) 하에서 B/C를 지속적으로 재추정하는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사업의 각 단계에서 검토함. 한국의 타당성재조사의 논거와 유사함.

□ 분석방법의 엄밀성 및 정치적 협상

- 영국의 경우 다양한 타당성조사 매뉴얼 (Greenbook, TAG)을 개발하여 엄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재정당국과 사업부처간 비공식 논의(dialogue)가 사업추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 또한 사업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 또는 정치적 고려가 자연스럽게 개입됨.
-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개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생산 단계와 정무적/정책적 판단을 반영할 수 있는 단계를 구별하고, 양자를 포괄하는 예산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모색할 필요

## [별첨] 질문지

### □ Questionnaires on PF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 한국정부의 PFS 개요

- ◇ (제도 도입배경) 한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착수 여부를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기 위해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당국이 직접 운영
- ◇ (대상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그리고 사회복지·교육·노동 등 기타 비투자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실시
  - (제외) 예타 대상규모의 사업이라도, 공공청사, 국방관련, 법정필수 시설, 재해 예방·복구지원 사업 등은 예타를 제외
- ◇ (분석방법) 경제성(B/C), 정책적 요소, 지역균형발전 요소 등 평가항목에 대해 표준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다기준 종합평가(AHP)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최종 결정
- ◇ (조사절차) 주무부처의 요청에 따라 재정당국이 사업추진의 시급성, 기획의 구체성, 국고지원 요건 등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기관(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의뢰하여 예타를 수행
- ◇ (추진실적)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010년까지 총 524건, 247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고 이 중 202개 사업(39%), 108조원 규모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억제
- ◇ (법적 구속력) PFS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고 예타 대상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참고: 한국의 예산편성절차 > 5년 단위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 (재정부, 4월) →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재정부에 제출 (각 부처, 6월) → 정부 예산안 마련 및 국회 제출 (재정부, 10.2일) → 정부예산안 심사 및 최종 승인 (국회, 12.2일)

☞ 최근 문제 의식

◇ (주무부처 역할 축소) 예타가 통과되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인식이 팽배. 주무부처의 보다 면밀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재정당국에서 사전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판단하는 예타의 역할이 왜곡되고 있는 실정

◇ (예타 수행기관 전문성 등 의문) 도로·철도 등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R&D 사업의 예타도 재정당국의 의뢰 하에 일부 국책연구기관이 수행. 객관성·공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 있으나 전문성 및 재정당국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한 사업 주무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재정투자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1. 귀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한 제도는 무엇이며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지 ?
2. 귀 국에서 사업별 사전타당성조사를 사업 주무부처 소관으로 실시한다면 이와 관련한 재정당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
3. 귀 국의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방법은 전술한 한국의 조사방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4. 귀 국의 재정사업관리제도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
5. 사업 착수 이후라도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가 또는 여건 변동에 의해 사업추진 타당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  
(참고) 한국의 경우, 물가인상분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했을 경우나 여건변동에 의해 수요가 30%이상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타당성재조사 제도도 운영 중

## □ Questionnaires on the MTFP

### ①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 중기 계획기간의 경제·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함께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을 제시('04년부터 수립)
  - \* IMF, OECD 등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의 거시경제변수(성장률, 금리, 환율 등) 전망 등을 종합 감안하여 재정총량 지표 등을 도출
-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 등 재정건전화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운영 중('10~'14년 계획부터)
  - \*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일정 수준 낮게 유지하는 지출 준칙 형태
- 정부가 매년도 변화된 경제·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연동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계획 수립연도를 포함하여 5년
- 다음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에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며 예산안과는 달리 의회의 심의·의결을 요하지 않음
  - \* 국회 제출 이전에 수립방향을 국회에 사전 보고('10, '11년 9월)

###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문제 인식

- ① 거시경제변수 전망의 객관성·신뢰성
  - 국회 등으로부터 낙관적인 성장률 및 이에 근거한 재정총량 전망 등에 대한 지적이 빈번하게 제기
- ② 재정준칙의 구속성 및 형태
  - 법률로써 준칙을 규정하지 않아 구속력이 약하고, 형태도 채무비율 또는 수지 준칙보다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 제기
- ③ 예산안 편성 시 중기계획과 예산안의 연계
  - 중기계획의 재정총량 및 분야별 지출 규모가 실제 차년도 예산 및 부처별 지출 한도 규모와 불일치하는 문제
- ④ 보다 더 장기 시계(10년 이상)의 계획 도입 필요성
  - 매년도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연동 계획임에 따라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

\*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

### ③ 질문 요지

1)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지? 제시된 수치는 전망인지 목표인지?

- 여러 기관에서 다른 전망치를 제시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전망치를 확정하는지? 재정총량에 대한 정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2) EU협약에 따른 재정준칙(GDP 대비 재정수지  $\Delta 3\%$ ,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이외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정준칙이 있는지? 그 존재 형식과 내용은 무엇이며, 미준수 시 조치는?

3) 중기계획의 재정수입·지출 등 재정총량을 향후 예산안 편성 및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시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는지?

-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중기계획을 연동 보완하는가? 중기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취해지는가?

4) 우리나라는 5년에 한번 최소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재정전망 실시 현황은 어떠한가, 10~20년 시계의 재정운용계획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수립 현황과 포함 내용은 어떠한가?